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7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최형두・김상욱・강대식

정동만 • 조인철 • 윤한홍

김소희 · 서천호 · 강승규

이종욱ㆍ김종양ㆍ허성무

김미애 · 이양수 · 서일준

유영석 • 신성범 • 최보유

김예지 • 유상범 • 조정훈

주호영 · 김상훈 · 서범수

조은희 · 김태호 · 박정하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 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중 "한도액안"을 "한도액안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의 한도액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액안의 회부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			
사업 <u>한도액안</u> 을 회계연도 개	<u>한도액안 및 「소프트웨어 진</u>		
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	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		
	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